미래를 준비하는,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

제157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**일시·장소:** ’26. 10. 7.(수) 14:00 ~ 15:4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**참 석 자**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(온라인 출석)

○ 해 양 경 찰 청 : 기획조정관, 안건 국·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9명

□ **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6건(원안의결 4, 수정의결 2), 보고 1건**

【심의·의결 6건】

연번	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
일괄상정	1	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• **(가산점 정비)** 자격증 가산점을 **면접시험 항목에서 분리**하여 **전체점수의 최대 1% 이내로 조정** • **(의사상자 우대)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** 응시할 경우 **단계별·과목별 만점의 3%·5% 가점 특전 신설** • **(기타정비) 응시연령*·영어검정** 정비** *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폐지에 따른 응시연령 적용대상 현행화 ** 토플 PBT 기준점수 삭제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정비	원안 의결	교육 훈련
	2	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**의사상자** 우대요건 신설에 따른 **제출할 증명서 추가** • **경장 시험** 폐지에 따른 **시험과목·배점 삭제**	원안 의결	
3		부령	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수상구조사 2급 **교육기관 강사기준 충족 유예기간 연장** - 기존 1년(2026.12.20.) → 개정 **3년(2028.12.20.)**	원안 의결	수색 구조
4		부령	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**수당 산정기준시간*** 및 **교육·훈련 수당 지급기준 정비**** * 240→**209시간 조정**, **14.8% 수당 인상 효과**(시급 11,227→**12,892원**) ** 기존 4시간 이상·이하 단위 → 개정 **‘시간’ 기준으로 지급** • 해양재난구조대의 **해촉 사유 정비**	원안 의결	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
5	훈령	「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**(양식 신설)** 비상가동 시 **상황 인계·인수 통일 양식 신설** • **(지휘·감독권) 중앙구조본부장의 지휘·감독권 구체화** • **(조직 통합)** 상황대응반·상황보고반 → **상황총괄반** • **(기타정비)** 연락관→연락반 수정, 정보반 수사기능 제외 등 정보기능 정비, 불요 복제규정 삭제 수정사항 한자어 사용 지양 (요도 → 상황도)	수정 의결	수색 구조
6	훈령	「항공수색구조안전 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ICAO 평가 대비 감독관 운영규칙 정비를 위한 훈령 개정 △ 안전감독관 신분증 서식 신설 △ 시정조치 이행력 확보 규정 보완 △ 아태지역 항행계획 이행 신설 △ 정기교육 주기(1년→2년) 완화 등 수정사항 신분증 폐기 방법을 명확히 규정 기존 소각·분쇄 → 변경 소각·분쇄 등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	수정 의결	

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**10월 주요 업무보고**	기획재정

첨부1 **수정의결 사항**

▢ 「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[별지 2호서식] 초기 구조 진행사항 보고서 양식(제11조제1항 관련) 〈신설〉 ■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[별지 제2호서식] (중략) [붙임] : 사고 발생 **요도** 등 관련 사항 첨부	[별지 2호서식] 초기 구조 진행사항 보고서 양식(제11조제1항 관련) 〈신설〉 ■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[별지 제2호서식] (중략) [붙임] : 사고 발생 **상황도** 등 관련 사항 첨부
수정사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'요도'를 '상황도'로 수정 (한자 사용 또는 병기 지양)	

▢ 「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항공구조조정본부(Aeronautical Rescue Coordination Center: ARCC)"란 수색·구조구역 안에서 수색·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**수색·구wh활동**을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	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수색·구조활동** ---------- ------.
수정사유 오탈자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6조의2(안전감독관 신분증) ⑤ 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을 감독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하며, 감독부서의 장은 반납한 신분증을 **소각하거나 분쇄해야** 한다.	**제6조의2(안전감독관 신분증)** ⑤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소각,분쇄 등 사용 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** ---.
수정사유 신분증 폐기 시 재사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 방법을 명확히 규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3조(재검토기한) 해양경찰청장은 위 규칙에 따라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**12월 31일까지를**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**제23조(재검토기한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12월 31일을**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수정사유 재검토기한 관련 자구 수정	

첨부2 주요 의견 (정기회의)

▢ 위원장 인사말씀

○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직 내 갑질, 성비위 등 새로운 비위 유형의 증가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국회 제출자료 등을 활용하여 **직무범죄 및 징계유형 별 변화 추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 제출** 바람.

– 향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겠음.

▢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등 2건

○ 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였고, 직무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의 가점 축소는 필요하였음. 가산 대상 자격증을 기존 125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개정방향에 동의하나 **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**함.

○ **자격증 가점 축소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과 제도 변경 예고기간에 대해 검토가 필요**함. 기존 가점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수험생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 일반 공무원 채용제도와 비교하여 **변경사항의 사전 예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임**.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.

– 자격증 가점 축소가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면 개정

필요성에 공감함. 다만, **제도 변경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불이익 문제가 발생**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.

- **경찰청, 소방청도 관련 제도를 정비**하였으며, 두 기관의 **평균 유예기간은 약 2년**정도임. 해양경찰청도 연초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, **관련 대학과 수험생들에게는 전년부터 제도 변경 내용이 알려져 있었음**. 해양경찰청의 유예기간은 1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, **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**할 때 **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**하였음. 기존 자격증 가점제도가 수험생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, 본래의 채용시험 준비보다 자격증 취득에 치중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주시길 바람.

- **자격증 가점 축소에 따른 수험생의 신뢰 보호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**해야함. 시행 유예기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, **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인정**함. **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**드림.

▢ 「수상에서의 수색 ·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○ 민간 인명구조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면서 **교육기관과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 외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·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**이 있어보임.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만으로

국가자격에 걸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. 국가자격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**자격등급 세분화와 평가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**가 필요해 보임.

- 국가자격 전환 과정에서 3·4급 등 자격등급 세분화까지는 검토되지 않음. **기존 민간자격보다 교육기관 및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**하였고 **실기시험 외 필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**하였음.

- **국가자격에 걸맞는 전문성 확보**를 위해 **영법 제한시간 및 평가항목을 강화**하고 **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**하였음. 다만,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교육생의 자격 취득 부담이 증가하고 응시율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. 관련하여 자격 등급별 난이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, **추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**하겠음.

○ 강사 자격 취득 및 경력요건을 고려하면 당초 유예기간 내에서 기준 충족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임.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를 **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제도 설계가 다소 미비**했던 것으로 보임. **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연장에는 동의**하나, **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**가 필요함.

○ 국가자격 운영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**안건은 원안의결하되, 위원들이**

제기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검토 바람.

▢ 「**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**」 **일부개정안**

○ 해양재난구조대원의 **활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**하는 경우 **추가 보상이 필요**하다고 생각함. 「근로기준법」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인정하나 민간인이 공익적 구조활동에 참여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**장시간 구조활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건강·안전 문제를 고려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**되어야 함.

–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. 지금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**추후 예산 당국과 협의**해보도록 하겠음.

– 구조대원에 대한 추가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**예산상 제약이 있을 것**으로 보임. 향후 **관련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**을 기울이도록 당부함.

▢ **기타 의견**

○ **신임 청장**님과 **해양경찰위원 간 상견례 또는 차담회 개최**를 검토해주시기 바람.

○ 2026년 국정감사 종료 후 **해양경찰 관련 주요 지적사항과 향후 개선대책을 정리**하여 **위원회 보고 바람**. 또한, **2027년 해양경찰 예산과 관련**하여 주요 증액사업 및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정리하여 **보고바람**.

– 국정감사 종료 후 **서면질의 결과와 예산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**하겠음.